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37
----------	-------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서영교 · 김준형 · 모경중
김승원 · 조계원 · 민병덕
복기왕 · 임오경 · 박지혜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전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는 반면,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훈방' 등의 조치가 가능함. 또한, 경찰 소년 선도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당사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 하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약 35.1%가 심리불개시·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수개월의 재판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선도·교육 및 사회 복귀가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찰 선도·교육 조치를 실시하여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및 제48조의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을 “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행의 내용, 비행의 동기, 비행 후의 정황
2. 소년의 생활환경, 교우관계 및 가족상황
3. 비행 전력 및 재비행의 위험성
4. 피해회복 노력 여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 등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중 “보호관찰소”를 “경찰관서·보호관찰소”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문가의 의견 조회) 수사기관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생략)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u>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u>	② ----- ----- <u>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 <u>. 이 경우 경찰서장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신설></u>	<u>1. 비행의 내용, 비행의 동기, 비행 후의 정황</u>
<u><신설></u>	<u>2. 소년의 생활환경, 교우관계 및 가족상황</u>
<u><신설></u>	<u>3. 비행 전력 및 재비행의 위험성</u>
<u><신설></u>	<u>4. 피해회복 노력 여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 등</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 방침) (생략)	제9조(조사 방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u>②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u>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u>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u><신 설></u>	<u>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u> 제12조(전문가의 진단) ----- ----- ----- ----- ----- -----<u>경찰</u> <u>관서·보호관찰소</u>----- -----. <u>제48조의2(전문가의 의견 조회)</u> <u>수사기관은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u>
--	--